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00회 제2차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
【의원발의】  
검 토 보 고 서



2023. 11.

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3. 11. 17.
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권속자 의원 등 9명(이영빈, 박정환, 이선주, 장호섭, 이진환, 고명욱, 황국주, 서민우)
- 발의일자: 2023. 11. 3.(금)
- 회부일자: 2023. 11. 3.(금)
- 검토기간: 2023. 11. 3.(금) ~ 11. 10.(금)

## 2. 제안이유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단위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1조 ~ 제3조)
- 지원계획의 수립, 사업 및 지원, 지원신청에 대해 규정(안 제4조 ~ 제6조)
-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(안 제7조)
-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(안 제8조 ~ 제9조)
- 공공시설 및 우수콘텐츠의 활용, 사업비의 반환, 보조금 준용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~ 제13조)

#### 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3. 11. 3. ~ 11. 13.)결과: 의견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미디어에 대한 적절한 육성·지원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의사소통 창구 역할과 마을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은
  - 안 제3조에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시책 추진 및 행·재정적 지원과 공익적 마을미디어의 독립성·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,
  -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매년 연도별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과 운영단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,
  - 안 제7조는 구민의 미디어 교육 및 창작지원 등을 위하여 마을미디어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, 직접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  - 안 제8조 및 제9조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마을미디어위원회를 설치·구성하고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본 제정 조례안은 각박한 도시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인 마을미디어를 통해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공동체 문화 복원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이 없음.
-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# 【관 계 법 령】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